

◎기상청공고 제2023-85호

기상분야 국가표준(KS)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, 산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「산업표준화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(산업표준제정 등의 예고)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7월 03일

기상청장

기상분야 국가표준(KS)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표준번호 및 표준명

연번	구분	표준번호	표준명
1	개정	KS B ISO 9059	태양에너지 — 기준 직달 일사계와 비교를 통한 현장 직달 일사계의 교정
2	개정	KS B ISO 9846	태양에너지 — 직달 일사계를 이용한 수평면 일사계의 교정

※ 표준내용은 e-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(www.standard.go.kr)에서 확인 가능

2. 개정 사유

- KS B ISO 9059: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
- KS B ISO 9846: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

3. 주요 개정 내용

- KS B ISO 9059, KS B ISO 9846: 번역 오류수정, 용어통일 및 KS A 0001:2021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등

4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23년 9월 1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(참조: 계측표준협력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

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

- 전자우편: karpion@korea.kr
- 팩스 : 042-481-6026

5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(전화: 042-481-7357)에 문의하여 주시기
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 또는 기상
청 행정홈페이지(<http://www.kma.go.kr>)의 「주요업무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」에 게재하였으니 참고
하시기 바랍니다.